

제 호

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신고증

- 성명(대표자) (생년월일)
- 상호(법인명)
- 사업장의 소재지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제4항·제123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